

의안번호	2207456
의 퇴 인	김기현의원
회 답 일	2025.4.16.
추계번호	25D0211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설치·운영, 사무국 설치에 따른 22명 인력 증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념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임·위탁 비용 등을 포함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25억 1,400만원(연평균 31억 2,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위원회	84	84	84	84	336	84
사무국 설치 등	1,762	1,652	1,692	1,734	6,840	1,710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0	0	0	445	445	111
기념사업	0	0	0	985	985	246
업무위탁	977	977	977	977	3,908	977
합계	2,823	2,713	2,753	4,225	12,514	3,1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6·25전쟁국군포로진상 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국군포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국군포로 및 6·25전쟁 국군포로가족(이하 “국군포로가족”이라 한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위원회는 국군포로 진상조사, 국군포로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가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밖에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국방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군포로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함(제3항)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2	안 제5조 (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제1항)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함(제1항)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0조 (기념사업)	정부는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1조 (국군포로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국군포로와 국군포로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13조 (업무의 위임·위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	—
2	안 제5조 (사무국의 설치)	○	—
3	안 제8조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
4	안 제9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	—
5	안 제10조 (기념사업)	○	—
6	안 제11조 (국군포로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	—
7	안 제13조 (업무의 위임·위탁)	○	—
8	안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설치·운영, 사무국을 설치하여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념사업, 국군포로 등의 신고처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업무의 위임·위탁 비용, 기념사업비 및 보고서 발간 비용 등 추가재정 소요 발생이 예상됨
-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설치·운영, 사무국 설치에 따른 인력 증원 규모,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념사업, 업무의 위임·위탁 비용 등은 국방부가 제출한 계획 및 유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 등을 적용하여 추계함

- 사무국 및 신고처 직원이 사용할 사무실 관련 비용은 국방부의 유희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함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8조제1항은 위원회의 구성은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9조제1항은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2029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

- 제정안에 따라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는 제정안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함
 -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을 10명으로 가정하며, 회의참석수당은 35만원(참석수당 15만원, 안전검토비 20만원), 회의는 월 2회(연 2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연간 회의참석수당

	민간위원 (명)	연간 회의개최 건수(회)	수당 (천원)	연간 추가재정소요 (백만원)
위원회	10	24	350	84

자료: 방위사업청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2.0	2.0	2.0	2.0	2.0	2.0

-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억 3,600만원 소요

[표 3]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	84	84	84	84	3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무국 설치(안 제5조),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안 제8조), 국군포로 등의 신고처 설치(안 제11조), 공무원의 파견(안 제14조)

- 제정안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여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국군포로 등의 신고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방부 계획에 따라, 사무국장 아래 기획총괄과 및 조사과 등 2개 과를 설치, 22명(별정직)을 신규채용하고 8명을 파견받아 30명 규모의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국방부 계획에 따라 고위공무원 및 4~7급까지 공무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받고, 별정직 22명은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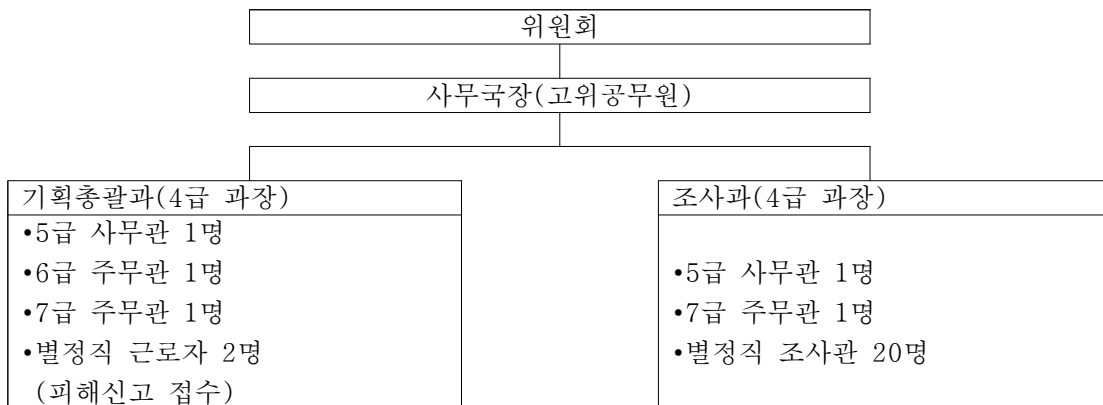
[표 4] 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구성

(단위: 명)

구 분	고위공무원	4급	5급	6급	7급	별정직	합계
인원	1	2	2	1	2	22	30

자료: 방위사업청

[표 5] 사무국 조직도



- (인건비 단가) 신규채용하는 별정직 22명의 인건비 단가는 5·18조사위 별정직 1인당 평균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를 적용

[표 6] 인건비 단가 추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별정직	61.44	62.91	64.42	65.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인건비는 인건비 단가에 신규채용 인원 22명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 효율²⁾을 적용하여 산정함

[표 7]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건비	1,352	1,384	1,417	1,451	5,604
기관부담금	177	182	187	193	739
합계	1,529	1,566	1,604	1,644	6,3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10·29 이태원 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10·29 이태원 희

2)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은 아래 표와 같음

	2026	2027	2028	2029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	13.066	13.130	13.194	13.286

생자추모위원회의 1인당 기본경비(2025년 예산 기준)³⁾에 사무국 전체 인원 30명의 기본경비를 산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경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8] 기본경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기본경비	84	86	88	90	3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전체인원 30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5.4월)한 1인당 자산취득비⁴⁾를 적용하여 산정함

[표 9] 자산취득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자산취득비	149	0	0	0	1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등) 국방부 계획에 따라, 8명의 공무원을 파견받고 22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신규채용하여 30명 규모로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경우,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0] 인건비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건비	1,352	1,384	1,417	1,451	5,604
기관부담금	177	182	187	193	739
기본경비	84	86	88	90	348
자산취득비	149	0	0	0	149
합계	1,762	1,652	1,692	1,734	6,8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이태원 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10·29 이태원 희생자추모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경비는 5,780만원(2025년 예산 기준,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로 구성)으로 1인당 기본경비는 2,752,000원임

4)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관 설립 시 1인당 자산취득비는 아래 표와 같음

(단위: 천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정부기관 자산취득비	4,981	5,080	5,182	5,285	5,391

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안 제9조)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발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사보고서 발간비용 4억 1,100만원(2025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9년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 발간비용을 산정함

[표 11] 6·25전쟁 국군포로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진상조사보고서	0	0	0	445	4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기념사업(안 제10조)

- 제정안에 따라 기념사업 추진 시 추가재정소요 발생
 - 국방부 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2029년에 1회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12] 기념사업(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비 고
기념·추모행사	100	초청인사, 대관, 리셉션 비용 등
기념영상 제작	200	생존 귀환포로 및 관계자 증언 영상 등
기념품 제작	10	국군포로 공로패, 기념배지 등
교육프로그램	200	각급학교 교육자료 발간 및 배포
포로명부, 자료집 발간	100	-
국군포로 전시실 비용	300	전쟁기념관 내 '국군포로 전시실' 내용 최신화 등
합 계	910	

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내용을 참조하였음

자료: 국방부

- 국방부가 제출한 기념사업 소요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정

[표 13] 기념사업 추진 시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기념사업	0	0	0	985	98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업무의 위임·위탁·공동수행(안 제13조)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는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계획임
 - 국방부가 제출한 바에 따르면, 지역별 국군포로 및 피해자 가족 피해 접수, 피해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위탁할 계획임
 - 지방자치단체에 6·25국군포로 진상조사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지방자치단체 업무 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참고하여 산정함

[표 14]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위탁 시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회의참석수당	734	734	734	734	2,936
국내여비	243	243	243	243	972
합계	977	977	977	977	3,908

주: 1) 회의참석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13명의 민간위원 및 전문가 5명 등 18명에게 회의참석수당 20만원씩 월 1회(연 12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2) 국내여비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13명의 민간위원에게 월 5회 시내출장(회당 2만원) 및 월 10회 시외출장(회당 10만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 설치·운영, 사무국 설치에 따른 22명 인력 증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념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임·위탁 비용 등을 포함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25억 1,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5]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	84	84	84	84	336
사무국 설치 등	1,762	1,652	1,692	1,734	6,840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0	0	0	445	445
기념사업	0	0	0	985	985
업무위탁	977	977	977	977	3,908
합계	2,823	2,713	2,753	4,225	12,5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제정안에 따라 6·25전쟁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업무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2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